

이용 안내서

카네이션요양원(부천점)

○ 인사말

“기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카네이션요양원(부천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원 소개

기관명	카네이션요양원(부천점)	설치일자	2016.06.01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입소인원)	26명 (26명)
대표자	정구익	협력의료	다니엘 병원,부천요양병원
홈페이지	cafe.naver.com/carnationbocheon	전화번호	032-325-2125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15, 2-201호(중동,뉴월드타운) * 지하철7호선 신중동역 7번출구 바로 왼쪽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11,500(1일)	
	상급침실 비용	100,000(1개월 기준)	
시설규모	건물면적:446.26㎡, 병실:1인용 2실, 2인용 2실, 4인용 6실		



- 요양원 전경

구분	침실	사무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의료간호	물리(작업)	프로그램	식당/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시설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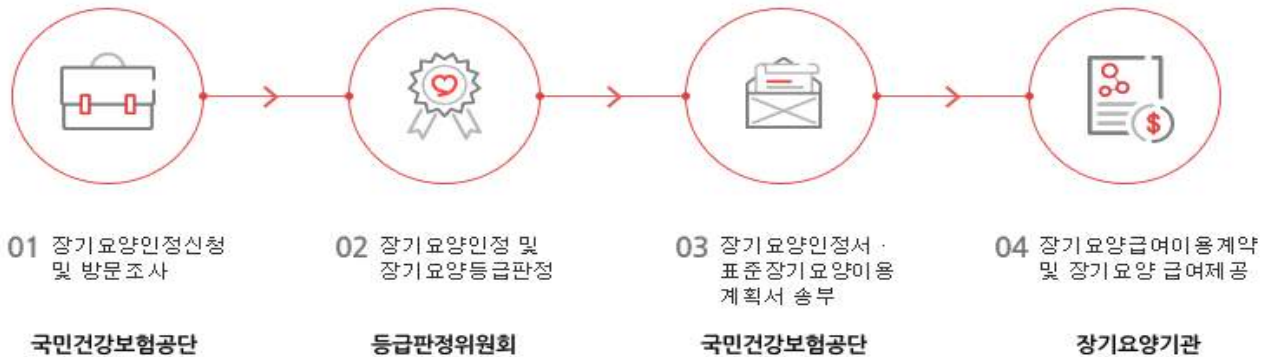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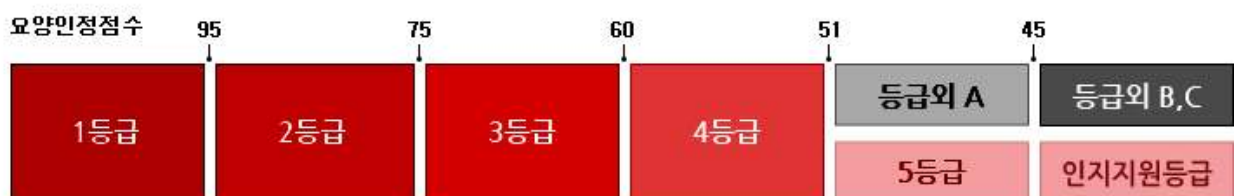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듐)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들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내용
06:00~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07:00~08:30	아침 식사 및 개인위생
8:30~10:00	기본 건강체크, 목욕, 아침체조
10:30~12:00	오전 프로그램 제공
12:00~13:00	점심 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3:00~14:00	개인활동, 휴식 말벗 지원
14:00~15:30	간식, 오후 프로그램 제공
15:30~16:40	개인활동
16:40~17:30	저녁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7:30~21:00	자유시간(음악, 말벗, TV), 취침약 투약
21:00	취침
22:00~06:00	야간점검

○ 프로그램 일정(맞춤형 프로그램/외부강사 진행)

월	화	수	목	금	토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기능회복훈련 (20분)
인지프로그램 (60분) 해님	인지프로그램 (60분) 해님	인지프로그램 (60분) 달님	인지프로그램 (60분) 달님	인지프로그램 (60분) 달님	
여가활동 (30분) 토끼		여가활동 (30분) 거북이			
▶ 매월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2025.01월 기준 요양원 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직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사무원
인원수	1	1	2	12		2	
근속년수	9년	9년	5~9년	1년~9년		4년	
요양보호사 : 주야간근무자 9명, 주간근무자 3명 / 주간4~5명, 야간 3명 근무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단위 :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20%)
1	90,450	18,090
2	83,910	16,782
3,4,5	79,240	15,848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40)	감경 8%, 12%

○ 계약의사(본인부담금)

초진	재진
3,420	2,470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삼성화재보험	2021.03.04. ~ 2031.03.03

● 후원 안내



● 후원의 종류

지정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 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계좌안내 : 국민은행 366901-04-275565 / 카네이션요양원(부천점)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32-325-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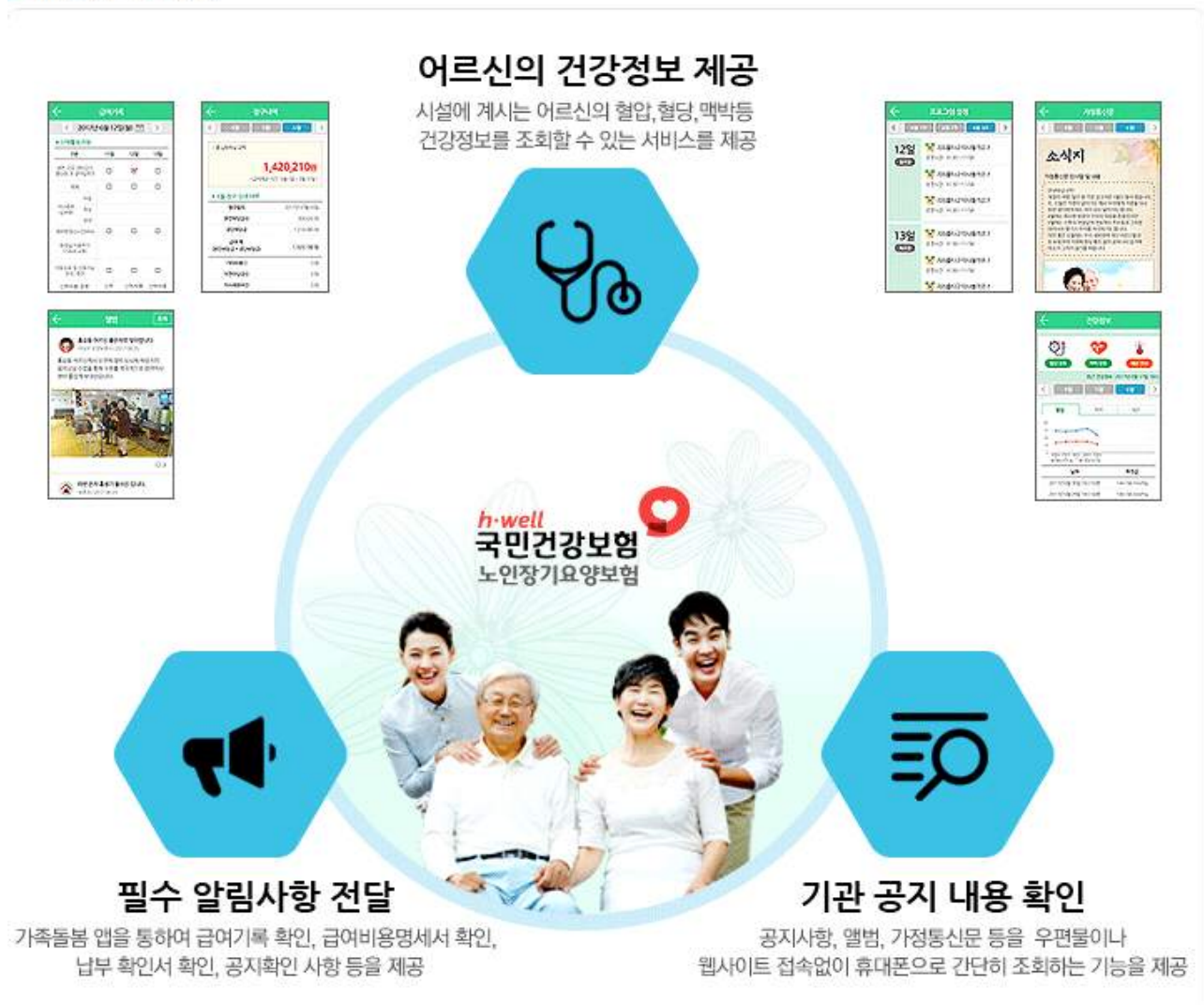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의료봉사	한방진료, 수지침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커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 ICT 기술서비스 (보호자 앱)

-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호자 앱을 통하여 부모님의 건강상태 및 앨범사진을 제공 합니다.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앱을 통해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 합니다.

가족돌봄앱 주요장점



▶ 이용신청은 기관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대응 현황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 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전화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절차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돌보겠습니다.

01
신청
클릭

02
인정조사
클릭

03
등급판정
클릭

04
이용계획서
클릭

05
결과통지
클릭

06
서비스이용
클릭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6명

2. 입소대상

-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시설)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게시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입소자'(또는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또는 ‘대리인’)이 최고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격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후 보관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

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

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원장,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후원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 ⑥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②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